



제427회 국회(임시회)
제3차 환경노동위원회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 등 〉

■ 이병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8793호)

2025. 7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	2
2.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대상 범위 확대 등	5
※ 참고자료	10
1.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·운영현황(2024년 말)	10

I. 제안경위

2025년 3월 11일 이병진위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 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, 방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,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며,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, 옥외작업자,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).

Ⅲ. 검토의견

1.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

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현행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1항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13조(실태조사의 실시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	제13조(실태조사의 실시 등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법 제13조¹⁾는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

1) 법 제13조 (실태조사의 실시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시행령 제8조(실태조사의 범위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
2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,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

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보다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.

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, 대기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향후 정책 효과 분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.

참고로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7조²⁾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,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합리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조사³⁾하도록 규정하

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2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7조(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)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(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)과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(排出源)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, 조사절차, 배출량의 산정방법,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고 있어,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의무화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.

3) □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실태조사 현황

- '99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공표(과학원)되었으며, '19년 이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('19.12월 개소)에서 1년 단위로 공표 중
- 부문별(사업장·수송·생활) 배출량 조사, 누락 배출원 발굴, 배출계수 개발 및 산정체계 개선 등 배출량 개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 중
 - ※ 배출량 개선 연구 결과는 배출정보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
 - (대상 물질) 9개 대기오염물질(PM-2.5, NOX, SOX, VOCs, NH3, CO, TSP, PM-10, BC)
 - (산정 범위) 배출원별(13개 대분류), 물질별, 지역별(시군구 수준) 배출량 산정
 - (공표 주기) 1년

2.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대상 범위 확대 등

개정안은 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, ②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어민 등 옥외 작업자와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22조(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<u>지역</u> 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(이하 “집중관리구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22조(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역 또는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</u> 등을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취약계층의 보호) ① 정부는 어린이· <u>노인</u>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(이하 “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	제23조(취약계층의 보호) ① ----- ----- <u>노인, 농어민 등 옥외 작업자 및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</u>

현행	개정안
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,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 ② (생략)	<u>높은 계층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첫째, 현행법 제22조4)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⁵⁾ 중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

4) 법 제22조(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(이하 “집중관리구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
2. 살수차·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
3.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
4.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
5.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
6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·해제 요건, 절차,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시행규칙 제13조(집중관리구역의 지정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정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(이하 “집중관리구역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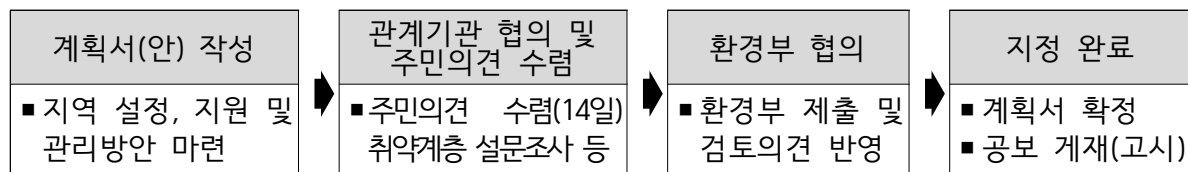
1.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일 것
2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(이하 “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일 것

5)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[별표1] 환경기준(제2조 관련)

1. 대기

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,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, 살수차·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⁶⁾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[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절차]



자료: 환경부

개정안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, 상대적으로 야외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 확률이 높은 농·어촌을 비롯하여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.

항 목	기 준
미 세 먼 지 (P M - 1 0)	연간 평균치 $5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 24시간 평균치 $10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초 미 세 먼 지 (P M - 2 . 5)	연간 평균치 $15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 24시간 평균치 $35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
6)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예시



자료: 환경부

다만, 환경부에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농·어촌 지역의 경우 현재도 지정요건(①미세먼지 농도, ②취약계층 이용 시설 인근)을 만족하는 경우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하고,

현재 집중관리지역의 평균 지정면적은 1km²에 불과⁷⁾한 반면, 농·어촌 지역의 경우 광범위하고 분산된 면적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상 집중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둘째, 현행법 제23조⁸⁾는 어린이·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⁹⁾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야외 단체활동 제한,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.

정부는 이를 근거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‘민감·취약계층 건강보호’를 추진과제로 설정하고, 미세먼지 민감·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조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7) 2024년 말 기준 전국 58개소 지정
(참고자료)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·운영 현황

8) 법 제13조(취약계층의 보호) ① 정부는 어린이·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(이하 “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,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,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9) 시행령 제14조(취약계층의 범위)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린이·영유아·노인·임산부·호흡기질환자·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
2. 옥외 작업자,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

[민감·취약계층 이용시설 보호조치 주요 내용]

구 분	내 용
학교	· 신학기 대비 전체 학교 미세먼지 안전점검*, 대응교육 실시 *교육청별 계획 수립 → 점검표 확인 → 합동 현장점검(교육부·교육청·유관기관 등)
노인요양시설	·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
어린이집	·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교육, 임시 휴원 또는 수업 단축 등 안내
자활센터	· 야외 자활근로 참여자 마스크 제공 및 경보 발령 시 휴식 시간 확대

자료: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(2025년~2029년), 관계부처 합동.

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·어민 등 옥외 작업자,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,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¹⁰⁾

문 의 처

02)6788-5536

10) 다만,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, 농·어민의 경우 시행령 상의 ‘옥외 작업자’에 포함되어 있고,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‘옥외 작업자’만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※ 참고자료

1.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·운영현황(2024년 말)

연번	시도	시군구	읍면동	지정면적 (km2)	지정일자	취약계층 시설 (개소)	대기배출 시설 (개소)
계	17개	58개소		75.3			
1	서울	금천구	독산1동	0.75	2020-01-02	17	103
2	서울	영등포구	문래동	1	2020-01-02	20	40
3	서울	동작구	흑석동	0.7	2020-01-02	25	3
4	서울	중구	신당동	0.7	2020-07-23	18	30
5	서울	은평구	대조동	0.8	2020-07-23	22	10
6	서울	서초구	반포동	1.6	2020-07-23	52	14
7	서울	관악구	신림동	1.2	2021-07-22	15	10
8	서울	광진구	구의3동	0.6	2021-07-22	19	4
9	서울	성동구	성수2가1동	1.25	2021-07-22	34	77
10	부산	서구	동대신동	1.1	2020-12-02	40	2
11	부산	동래구	명장1동	1.09	2020-12-02	32	0
12	부산	금정구	청룡동	0.98	2020-12-02	33	0
13	부산	사하구	장림동	1	2021-06-24	31	30
14	대구	달서구	호산동	0.77	2020-05-20	20	74
15	인천	계양구	효성동	0.54	2020-04-02	30	41
16	인천	동구	화수·화평동 등	1.1	2020-04-02 (2023-11-28)	42	114
17	인천	중구	연안동	0.98	2021-09-28	13	108
18	인천	남동구	논현2동 등	0.67	2022-12-05	27	136
19	인천	부평구	갈산1,2동	1.6	2022-12-05	27	52
20	광주	서구	금호2동	1.19	2020-04-21	55	0
21	광주	서구	동천동	1.17	2022-04-29	42	2
22	광주	서구	풍암동	1.35	2023-05-31	64	0
23	광주	동구	학동	0.8	2022-04-29	36	2
24	대전	대덕구	대화1동	0.39	2020-03-24	15	92
25	대전	대덕구	목상동	0.3	2020-03-24	16	84
26	대전	대덕구	읍내동	2.57	2020-11-16	22	16
27	울산	남구	삼산동	0.63	2020-05-15	84	215

연번	시도	시군구	읍면동	지정면적 (km2)	지정일자	취약계층 시설 (개소)	대기배출 시설 (개소)
28	세종	세종시	조치원읍	0.52	2020-08-10	20	0
29	세종	세종시	부강면	1.56	2020-08-10	15	2
30	경기	성남시	중원구 상대원동	0.84	2020-03-04	67	89
31	경기	오산시	오산동	0.77	2020-04-01	34	9
32	경기	부천시	삼정동	1.85	2020-06-15	51	458
33	경기	이천시	창전동	0.72	2020-08-07	27	4
34	경기	안성시	공도읍	0.94	2020-10-07	56	9
35	경기	수원시	영통구	0.44	2020-12-01	49	22
36	경기	수원시	권선구 평동	1.24	2022-08-25	26	35
37	경기	수원시	장안구 정자3동	0.59	2023-04-21	28	3
38	경기	수원시	팔달구 인계동	0.76	2024-03-25	25	0
39	경기	용인시	수지구	1.47	2020-11-25	66	2
40	경기	용인시	기흥구 신갈동	3.06	2022-08-23	62	17
41	경기	용인시	처인구 백암리, 근창리	5.69	2023-05-10	11	6
42	경기	화성시	동탄동	1.4	2020-12-01	83	23
43	경기	평택시	세교동	0.49	2021-04-13	10	36
44	경기	안양시	동안구 호계3동	0.66	2021-10-28	35	153
45	경기	안양시	만안구 박달2동	0.61	2023-04-24	33	10
46	경기	김포시	풍무동	1.04	2022-01-03	40	12
47	경기	광명시	광명동	10.2	2024-12-18	62	3
48	강원	춘천시	낙원동	1	2020-04-13	69	2
49	충북	단양군	매포읍	0.78	2020-02-13	7	20
50	충남	아산시	모종동	0.69	2020-03-30	34	0
51	충남	천안시	서북구	0.33	2020-04-24	27	0
52	전북	전주시	덕진구 만성동	1.4	2020-04-06	13	81
53	전남	광양시	중동	0.96	2020-03-13	75	70
54	경북	포항시	남구 오천읍	1.4	2020-06-02	40	0
55	경남	김해시	내외동	1.1	2020-04-17	71	1
56	경남	창원시	성산구 가음정동	2.89	2021-10-29	70	3

연번	시도	시군구	읍면동	지정면적 (km2)	지정일자	취약계층 시설 (개소)	대기배출 시설 (개소)
57	경남	양산시	양주동	1.87	2021-11-10	113	0
58	제주	제주시	화북동	1.2	2020-09-24	28	0

자료: 환경부